

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(안 제4조)

-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 교육 위탁 가능함 명시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##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교육의 위탁)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4조(교육의 위탁)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□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6조(권한의 위탁) 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 요인

-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은 연 500만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됨

※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소요예산(최근 5년간)

| 구분           | 2019예산 | 2020예산 | 2021예산 | 2022예산 | 2023예산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예산액<br>(천 원) | 5,000  | 5,000  | 4,500  | 4,000  | 5,000  |

### 4. 작성자

- 문화예술과 행정8급 이주호 (☎480-6623)

| 소 관 부 서     |       | 문화예술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박 정 은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팀 장   | 박 미 라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이 주 호<br>(480-6623) |